

監査意見의 推移要因에 관한 研究

정 언 해*

〈목 차〉

I. 序論	4. 意見拒絶 表明事由
II. 監査意見의 理論的 背景	5. 特記事項 分析
1. 監査意見의 本質	IV. 監査意見의 限界點과 證券市場에 미치는 影響
2. 外部監査對象會社의 變遷	1. 監査意見의 限界點
3. 重要性 判斷基準	2. 證券市場에 미치는 影響
4. 先行研究의 檢討	V. 結論
III. 監査意見의 推移要因에 관한 實態分析	參考文獻
1. 年度別 推移	Abstract
2. 限定意見 表明事由	
3. 不適正意見 表明事由	

I. 序 論

국제회계법인인 Price Waterhouse-Coopers의 회계투명성 조사에 대한 발표에 의하면 우리 나라는 조사 대상 35개국 중 불투명지수 31위라고 한다. 특히 기업회계기준 및 관습의 불투명지수가 최하위이다. 기업회계의 불투명성 하면 기업의 분식회계가 떠오른다. 최근 분식회계로 세간의 화두로 된 대우와 동아건설의 막대한 규모의 회계분식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IMF 경제위기는 사실상 회계부실이 불러왔다는 평가가 재확인되었으며, 투명한 회계에 대한 기업과 이해관계자들의 의식이 과거에는 얼마나 부족하였는가를 알 수 있다. 회계정보 보고는 회계정보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을 위해 제공된다. 경영자는 위탁받은 자원을 보전하고 그 효율적

* 동의대학교 상경대학 경영학부 회계학전공 교수

인 운용을 통하여 수익을 창출할 책임을 질뿐 아니라 이에 대한 결과를 정확히 측정하여 진실하고 투명하게 보고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 경영자가 보고하는 회계정보는 투자자, 채권자, 종업원, 거래처, 고객, 정부 및 감독기관, 일반대중 등 다양한 주체에 의해 이용된다. 주주는 이익배당을 위해, 채권자는 채권의 안전한 회수와 추가적인 투자 의사결정을 위해 회계정보를 이용한다. 그 밖에 회계정보의 직·간접적인 이해 당사자가 그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우리 나라의 회계정보의 투명성이 낮게 평가된 원인 중 외부감사환경의 한계로 인해 신뢰성 있고 투명성 있는 회계정보를 공급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다. 외부감사의 목적은 기업이 공시한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에 대한 감사인의 의견표명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증권시장에서 회계정보가 기업가치에 대한 정보를 공급하는 경영자와 정보의 수요자인 투자자 사이에 존재하는 정보비대칭(information asymmetry)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게끔, 우리 나라 외부감사대상기업의 감사의견의 추이요인을 분석함으로써 회계정보이용자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감사의견의 역할과 감사의견의 한계점 등을 연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監査意見의 理論的 背景

1. 監査意見의 本質

회계감사는 회사가 외부의 정보이용자를 대상으로 작성한 재무제표를 조직적으로 검토하고 평가하는 과정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¹⁾ “회계감사란 감사대상인 특정실체의 재무제표가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그리고 기타 재무정보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표시하고 있는가의 여부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을 얻기 위하여 독립적인 외부감사인이 객관적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재무제표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체계적인 과정을 말한다.” 감사의견은 회계감사의 최종산출물이다.²⁾ 감사가 완료되면 감사인은 감사보고서를 통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정보이용자에게 경영자의 주장인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작성되어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고, 그에 합당한 감사의견을 표명하여야

1) 송자·정종암·주인기(공저), 회계감사(법문사), 1991, p. 21

2) 송자·정종암·주인기(공저), 앞의 책, p. 23.

한다. 감사인이 감사의견을 표명함으로써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재무제표의 이용자가 회사에 관하여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³⁾

이러한 감사의견에는 적정의견, 한정의견, 부적정의견, 의견거절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감사인은 감사수행 결과 알게 된 예외사항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감사의견을 표명해야 한다.

감사준칙 432에서는 독립성이 유지되고 감사범위에 제한이 없으며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을 경우에는 적정의견을 표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적정의견 이외에 한정의견이 표명되느냐 또는 의견거절, 부적정의견이 표명되느냐는 기본적으로 중요성의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나 독립성이 결여된 경우에 한해서는 중요성의 정도와 관계없이 항상 의견을 거절하게 된다.

또한 예외사항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나 재무제표 전체적인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예외사항을 제외하면 재무제표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한정의견을 표명하게 된다. 그러나 적정의견 이외 의견의 표명사유가 특히 중요하며 재무제표 자체로서의 존재의의가 의문시되거나 특정사실이 수정 혹은 확인되지 아니하여 재무제표에 기초한 대부분의 의사결정이 오도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적정의견이나 의견거절을 할 수 있다. 이처럼 감사인이 감사의견을 결정하기 위하여 채택되는 중요성기준은 회계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설정하게 된다. 회계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결국 재무제표의 왜곡 표시 정도에 따라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2. 外部監査對象會社의 變遷

1980년 12월 31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에는 외부감사의 대상을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30억원 이상 또는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로 규정했고, 1988년 4월에는 자산총액이 3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로 그 기준을 단일화한다. 그후 전반적인 회사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1990년 3월에는 자산총액을 40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였고, 1993년 5월에 또다시 자산총액을 60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 1998년 4월에는 현재의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했다. 최근 재무제표이용자의 정보요구가 많아지면서 개별기업뿐만 아니라 경제적 단일체로서의 연결실체에 대하여도 1994년 12월 결산법인부터 외부감사대상회사에 포함

3) 회계감사기준 제3조.

하여 외부감사를 의무화했다. 우리 나라의 경우 미국 등 주요 선진국과는 달리 기업의 소유구조가 개인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현행 연결재무제표준칙상 기업소유에 의한 종속회사의 범위는 기업의 경제적 실체를 적절하게 나타내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으며 이러한 이유로 현재 정부에서는 기업집단별로 경제적 단일체를 구성하는 경우 연결재무제표와는 별도로 이들 기업집단의 재무제표를 결합한 결합재무제표를 1999회계연도부터 작성하고 외부감사를 받도록 외부감사법상 의무화했다.

3. 重要性的 判斷基準

감사의견 표명시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대통령령으로 표시된 상장법인 등의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 제3조 4에서 회계처리와 재무제표의 작성에 있어서 과목과 금액을 실용적인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되, 과목과 금액이 중요한 것은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형식적인 양적 판단기준이 정비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규정은 너무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의 재무상태에 실질적으로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항목에 주의를 집중시키는 양비를 초래할 수 있다. 그 외 이용자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문구가 허다하게 발견됨으로써 감사기준 및 감사실시·보고준칙의 미비를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어느 정도 해결하기 위하여 회계정보의 이용자, 회계담당자, 감사인이 모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중요성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3.1 重要성의 개념

회계절차는 기록·분석·통합과 기업실체에 관한 재무적 정보의 공개를 포함한다. 정보는 성질을 달리하는 이용자들의 요청에 따라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하여 작성된다. 가장 평범한 목적은 특정기간의 진실하고 공정한 기업활동의 결과와 특정인의 재무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모든 거래에 있어서 최초의 기록은 특히 외부의 독립적 실체와의 계약이 있을 경우 정확한 화폐금액으로서 거래의 인식이 가능하므로 일차적으로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 이후의 분석·통합·제시 등은 중요성에 관한 일련의 판단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회계담당자들은 정보공개 목적과 관련하여 정보와 이용자들의 요구에 합목적적인가에 관하여 판단을 해야 하며 정보제공의 형태(양식), 공시의 정도에 관하여도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판단에 있어 중요성의 개념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주주·소유주·채권자·경영층의 요구는 그들의 특수한 입장에 따라서 각기 다를 수

있다. 모든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중요성”의 정확한 개념정의는 불가능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일차적으로 어떤 항목이나 사상이 되거나(omission) 공개되지 않거나(nondisclosure) 잘못표시(misstatement) 되었을 때 제시된 재무정보의 진실성과 공정성을 심히 그르치게 된다면 그런 항목과 사상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⁴⁾ 중요성의 개념에 관하여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다음과 같이 나라별로 소개하기로 한다.⁵⁾

3.1.1 미국

① AICPA

a) Accounting Research Bulletin, 1939.

동 의견의 표명에 있어 상대적인 상황에 따라 충분히 중요한 것만을 적용할 것이다. 중요하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는 한 대로 다루어도 좋을 것이다.

b) Accounting Research Study No. 7.

문장이나 사실 및 항목이 그것들이 존재하는 대로 현재 상황에서 충분히 고려가 된다면, 그것들의 공시나 처리될 방법이 합리적인 사람의 판단이나 행동에 영향을 미치거나 달리 결정될 성질의 것이라면 그것들은 중요하다.

c) APB Statement No. 4.

재무보고는 평가나 의사결정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에만 관련이 있다.

d) 기타 APB Opinion No.15의 Note 2, APB opinion No.18의 Paragraph 17 과 중요성에 관한 비량적 지침을 제시한 것으로, APB opinion No.20의 Paragraph 38, APB opinion No.28의 Paragraph 21 등 No.30의 Paragraph 24 등을 들 수 있다.

② SEC

a) Regulation S-X, Rule 3-02

다른 방법으로 공시가 요구될 지 모르는 어떤 항목의 금액은 중요하지 않으며 따라서 별도로 제시될 필요는 없다.

b) Regulation S-X, Rule 1-02

4) The Institute of Chartered Accounting in Australia, The Concept of Materiality(October 1972) pp. 3~4

5) 이하 FASB, *op. cit.*, pp. 25~43을 참고함.

어떤 문제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할 필요성을 규정하는 경우에, 중요성이란 개념은 신중한 투자자가 합당하게 알고 있어야 할 정보에 한정된다.

c) 기타 중요성을 결정함에 있어 양적·지침을 제시하고 있는 바, Rule 3-06, Rule 5-04, Rule 3-08 및 최근의 간행물을 들 수 있다. (Form 10-K, Form S-1 과 함께)

③ AAA

회계의 경우, 중요성이란 상대적인 중요도로 기술될 수 있다. 그러나 전적으로 상대적인 크기에 의존하는 것은 아니다. 중요도란 양적이거나 질적인 특성에 달려 있거나 또는 그 양자의 결합에 의존하기도 한다. 양적인 중요성의 특성은 i) 항목의 상대적 크기 ii) 유사한 또는 관계있는 항목에 대한 항목의 크기이다. 질적인 중요성의 특성은 i) 반영된 행위·활동·조건 본래의 중요성 ii) 미래의 사상에 영향을 줄 항목자체의 중요성이다. 최종적인 판단은 재무제표의 예기된 이용에 의해 결정되나 관계 있거나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항목은 중요하다.

④ 기타 NAA, CASB, FPC, ICC 등의 견해도 다수 있다.

3.1.2 Canada

캐나다의 척허회계사회의 회계연구위원회(The Accounting Research Committee of the Canadian Institute of Chartered Accountants)에서는, 중요성이란 특수한 상황하에서의 전문적인 진단에 관한 문제이지만, 위원회는 일차적으로 재무제표의 독자가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그 중요성의 합리적 관점에 의하여 판단되어 질 것으로 믿는다. 만약 어떤 항목이 의사결정에 합리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 중요하다고 여겨져야 한다. 또한 「감사기술에 대한 캐나다 연구도」(The Canadian Study Group on Audit Techniques)에서 1972년 감사에 있어서의 중요성이란 보고서를 출간했는데 거기에서 감사절차작용을 주도하고 재무회계와 보고에 있어서 중요성의 결정에 관해 기술하고 있다. 이 연구단은 중요성을 결정하는 기준으로서 총이익이 사용하기 쉽고 객관적이며 실용적이고,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일정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이라 권고하고 있다.⁶⁾

6) FASB, *op. cit.*, pp. 34~35 .

3.1.3 영국

1968년에 영국과 웨일즈의 칙허회계사회의 위원회는 “계정에 관계된 중요성의 해결”(The interpretation of ‘material’ in relation to Accounts)이란 보고서를 간행했다. “회계에 관련하여 중요하다라는 단어는 각종의 상황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광범위한 해석을 할 수 있도록 의도된 것이다. 따라서 정확한 정의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그러나 회계적인 의미에서 어떤 사실이 공시되지 않거나, 잘못 공시되거나 생략되었을 때 고려되고 있는 다른 재무제표나 계정에 의해 고통될 가능성이 있을 때 그러한 사실은 중요하다. 중요성의 원칙은 회계의 전과정에 중요하다. 무엇이 중요한가 하는 문제는 경험에 의한 전문적 판단의 수행 및 진실하고 공정한 견해의 요청을 만족시킬 문제인 것이다.”

3.1.4 오스트레일리아

1974년 8월에 오스트레일리아 칙허회계사회 전국위원회와 오스트레일리아 회계사의 일차위원회는 “재무제표에 있어서 중요성”이란 제하의 회계기준보고서를 출간하였다.

이 간행물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측정과 커뮤니케이션으로서의 회계는 판단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이런 판단을 함에 있어서 중요성이란 커다란 역할을 한다. 모든 상황에 타당한 중요성의 개념정의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어떤 항목의 생략, 비공개, 잘못 공시가 결과적으로 재무제표에 제시된 정보를 왜곡시키거나 결함을 유발시킴으로써 이용자들이 의사결정이나 평가를 함에 있어 영향을 받는다면 그 항목은 중요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용자들은 재무제표에 주어진 정보를 이해할 것이며 그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가정이 필요하다. 또한 누가 특정 재무제표의 이용자가 될 것이며 이용자의 정보요구에 관한 고려가 중요성을 결정함에 요청될 것이다. 기업의 재무제표에 있어서, 그 기본적인 이용자는 현재·미래의 주주나 채권자가 될 것이다.”

3.1.5 우리 나라의 경우

상장법인 등의 회계처리규정 제3조 4는 “회계처리와 재무제표의 작성에 있어서 과목과 금액을 실용적인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되, 과목과 금액이 중요한 것은 이를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한국공인회계사회 제정의 감사실시 및 보고기준에서는 “중요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등의 표현이 다수 발견되고 있으며 의견서 제2호와 제8호에서도 중요성에 관하여 기술되어 있으나 종합적인

간행물이나 연구결과로서의 의견 표명은 없다.

이상의 여러 견해를 종합하여 보면, 중요성이란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재무제표의 기본적인 이용자인 주주나 채권자들이 경제적인 의사결정을 수행함에 있어 어떤 문장이나 사실 혹은 항목이 생략되거나 공시되지 않거나 잘못 공시됨으로써 판단을 달리하거나 영향을 받게 되는 양적·질적 정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다. 물론 회계정보이용자에게 재무제표가 이르게 되는 과정에서 회계담당자와 회계감사인의 중요성에 관한 판단이 내려져 있음은 간과될 수 없다.

4. 先行研究의 檢討

4.1 外國의 관련연구

피스(Firth)의 연구(1978)⁷⁾는 1974년과 1975년 사이에 한정의견을 받은 247개의 영국기업들을 대상으로 감사의견의 정보효과를 평가하였다. 표본기업은 한정의견의 사유에 따라 진실성과 공정성의 한정기업, 종속회사에 대한 감사불능으로 한정의견을 받은 기업, 계속기업의 한정기업, 기업회계기준위배의 한정기업, 기업회계기준에 위배되나 그 절차에 감사인이 동의한 한정기업, 3년간 계속하여 한정의견을 받은 기업 등으로 세분하여 한정의견의 정보효과를 평가하였다. 그 결과, 진실성과 공정성의 한정기업과 종속회사에 대한 감사불능으로 한정의견을 받은 기업의 경우에 감사의견 공표일에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주가의 하향조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의 연구는 감사의견의 정보효과를 검증하였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지만, 감사의견과 동시에 공표되는 배당과 이익이 미치는 효과를 적절히 통제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엘리엇(Elliott)의 연구(1982)⁸⁾에 의하면 그는 조건부한정의견이 주가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1973년부터 1978년까지 최초로 한정의견을 받은 기업 145개를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주식수익률은 개별수익률을 이용하였으며, Wall Street Journal(WSJ)에 회계이익이 발표되는 시점을 감사의견이 발표되는 시점으로 삼고 발표 전 45주에서 발표 후 14주의 초과수익률을 관찰한 결과 시장참여자들이 감사의견이 나오기 전이라도 한정의견이나 기업의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입수 가능하다면, 공표 이전이라도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는 특정의 불확실성이 경제적 의미를 갖는다면, 감사의견이 공시

7) M. Firth, "Qualified Audit Reports: Their Impact on Investment Decision," *The Accounting Review*(July, 1978), pp. 642~650.

8) J. Elliott, "Subject to' audit opinions and abnormal security returns: Outcomes and ambiguities,"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20 (Autumn 1982) part 2. pp. 617~638.

되기 전에 다른 정보를 통해서 주식평가에 반영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한정 의견 그 자체가 정보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는 해결하지 못하였다. 도드, 도퓌크, 홀사우젠과 레프트비치(Dodd, Doupuch, Holthausen and Leftwich)의 연구(1984)⁹⁾은 미국의 NASE, AMEX 상장기업 중 1973~1980년도 사이에 최초로 한정 의견 또는 의견 거절을 받은 604개의 업체를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연구 결과는 한정 의견의 공시가 주식의 수익률에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왔다. 의견 거절의 경우는 공시 시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負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나왔으나, 표본의 수가 5개밖에 되지 않았다. 최와 지터(Choi and Jeter)의 연구(1992)¹⁰⁾는 분기별 순이익 발표일 전에 한정 의견을 받은 기업의 이익 반응 계수와 순이익 발표일 후에 한정 의견을 받은 기업의 이익 반응 계수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연구 분석 결과, 계속성의 한정 의견을 받은 경우 및 불확실성의 한정 의견을 받은 경우 모두 사전적 이익 반응 계수(각각 0.4343, 0.4712)가 사후적 이익 반응 계수(각각 0.192, 0.1366)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크게 나타남으로써 감사 의견이 이익 반응 계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이들은 그 이유로 한정 의견이 기업의 현재 및 미래 현금 흐름에 대한 기대를 감소시켰거나 아니면 한정 의견이 이들 기업의 경제적인 제반 환경을 반영한 것이므로 이익의 지속성을 감소시켰기 때문일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앨더만¹¹⁾(Alderman: 1997)은 불확실성에 관한 한정 의견의 정보 효과를 20개의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주가의 반응을 조사하여, 한정 의견 발표 시점을 중심으로 전후 3년간의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을 분석한 결과 통제 집단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결과를 얻어냈다.

4.2 국내의 관련 연구

이효익·박철우의 연구(1990)¹²⁾에서는 적정 의견 이외의 감사 의견이 공시되는 시점에서의 정보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감사 의견의 공시가 주식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이를 위하여 감사 의견의 공시 시점을 결산 공고일로 결정하고, 주식 수익률을 이용하여 공시 시점의 일별 초과 수익률의 변동을 관찰하였다.

9) P. Dodd, Doupuch, R. Holthausen and R. Leftwich, "Qualified Audit Opinions and Stock prices: Information Content, Announcement Dates and Concurrent Disclosure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6(1984), pp. 3~38.

10) S. K. Choi and D. C. Jeter, "The effects of Qualified Audit Opinion on Earning Response Coefficient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1992), pp. 229~247.

11) S. K. Choi and D. C. Jeter, "The effects of Qualified Audit Opinion on Earning Response Coefficient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1992), pp. 229~247.

12) 이효익·박철우, "적정 의견 이외의 감사 의견 공시와 주가의 반응, 증권조사월보(증권감독원), 1990. 11. pp. 3~20.

이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적정의견 이외의 감사의견, 즉 한정, 부적정 또는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되는 제한내용에 따라 주식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다고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당기순이익을 과대표시하고 있다는 제한내용의 경우에는 負의 초과수익률이 나타났다. 그러나 당기순이익을 과소계상한 경우에는 正의 초과수익률이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수준은 아니었다.

한편, 당기순이익에 무영향인 제한내용의 경우에는 負의 초과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사실은 당기순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더라도 기업의 불확실성 및 감사범위의 제한 등이 기업의 평가에 대한 위험수준을 반영하여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김연재의 연구(1992)¹³⁾는 한정의견에 대한 투자자의 반응을 조사하기 위하여 1982년 2월부터 1991년 2월 사이에 기업회계기준의 위배로 인한 한정의견을 받은 기업(표본기업)을 감사보고서를 통하여 28개를 추출하였다.

또한 한정의견의 정보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일별 주식수익률을 이용한 실증적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연구에서 말하는 바는 주식시장에서 적정의견기업이 한정의견기업으로 전환될 경우에는 주가의 유의적인 하락이 있었으나, 한정의견기업이 적정의견기업으로 전환될 경우에는 주가의 유의적인 상승이 없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들은 호재보다는 악재에 더욱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의 문제점은 다중회단면 분석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익예측오차의 절대금액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비정상수익률은 비율의 개념이고, 이익예측오차는 절대금액이기 때문에 서로 대응시켜서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한정의견기업에 대한 통제기업을 선정할 때 이익(손실)의 변화패턴은 보지 않고 단순히 순이익증가율만을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표본선정에 오류가 발생할 소지가 있었다는 점에 문제가 있었다. 정만훈(1986)¹⁴⁾은 1980년 1월부터 1985년 6월 까지 직전년도에 적정의견을 받았으며 해당년도 반기검토보고서상에 감사인의 지적이 없는 기업을 표본으로 선정하고, 한정의견의 사유 중에서 기업회계기준 위배의 경우를 당기순이익 과대계상과 과소계상으로 나누어서 감사보고일 주변에서의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과대계상 한정의견에 있어서는 시장이 효율적으로 반응하였으나, 과소계상 한정의견의 경우에는 시장이 효율적이지 못하였다. 이 연구의 문제점도 이익과 배당효과를 통제하지 못했다는 점이 한계이다.

13) 김연재, "한정의견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적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1992.

14) 정만훈, "한정의견에 대한 증권시장의 반응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대학원, 1986.

Ⅲ. 監査意見의 推移要因에 관한 實態分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외부감사대상회사로서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된 6,541개의 개별감사보고서와 최근 5년간을 대상으로 감사의견의 추이요인 및 특기사항 등을 분석한다.

1. 年度別 推移

1.1 外部監査對象會社의 監査意見 推移

<표 Ⅲ-1>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외부감사대상회사의 감사의견 중 평균 87.2%가 적정의견으로 감사의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회사가 중요한 기업회계기준의 위배사항 없이 재무제표를 작성했고 이에 대해 감사인이 독립성을 가지고 중요한 감사범위제한 없이 감사를 실시했음을 의미한다. 한정의견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부적정의견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바, 이는 기업회계기준의 위배에 대한 감사기준을 보다 엄격히 적용함에 따른 것이다. 의견거절은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는데 이는 감사인의 책임문제가 강화됨에 따라 감사범위제한에 대해 감사인 스스로가 엄격히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 Ⅲ-1> 외부감사대상회사의 연도별 감사의견 현황

(단위 : 사, %)

구 분	1995 ('95.1~'95.12) 결산법인		1996 ('96.1~'96.12) 결산법인		1997 ('97.1~'97.12) 결산법인		1998 ('98.1~'98.12) 결산법인		1999 ('99.1~'99.12) 결산법인	
	회사수	비율	회사수	비율	회사수	비율	회사수	비율	회사수	비율
적정의견	6,660	86.6	6,660	87.1	6,186	86.0	6,198	88.5	5,748	87.9
한정의견	899	12.6	899	11.8	881	12.3	660	9.4	599	9.1
부적정의견	13	0.1	13	0.2	38	0.5	26	0.4	44	0.7
의견거절	71	0.7	71	0.9	89	1.2	117	1.7	150	2.3
계	7,643	100.0	7,643	100.0	7,194	100.0	7,001	100.0	6,541	100.0

1.2 上場法人의 監査意見 推移

<표 Ⅲ-2>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증권선물위원회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적정의견비율이 90%를 상회함으로써 전체외부감사대상회사의 경우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상장법인의 경우 감사인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의 증가, 엄격한 감리실시 등을 통하여 적정 회계처리에 대한 인식이 일반 외부감사대상법인의 경우보다 높은 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1998년에 비하여 1999년에는 적정의견비율이 감소하고 의견거절비율이 증가하는 바, 감사인의 회계감사기준에 대한 엄격한 적용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표 III-2〉 상장법인의 연도별 감사의견 현황

(단위 : 사, %)

구 분	1995 (12월결산법인)		1996 (12월결산법인)		1997 (12월결산법인)		1998 (12월결산법인)		1999 (12월결산법인)	
	회사수	비율	회사수	비율	회사수	비율	회사수	비율	회사수	비율
적정의견	507	95.9	547	97.2	493	93.4	476	94.6	479	93.6
한정의견	9	3.9	13	2.3	31	5.9	22	4.4	21	4.1
부적정의견	-	-	-	-	1	0.2	-	-	1	0.2
의견거절	2	0.2	3	0.5	3	0.5	5	1.0	11	2.1
계	518	100.0	563	100.0	528	100.0	503	100.0	512	100.0

1.3 登錄法人의 監査意見 現況

〈표 III-3〉에 의하면 1999년말 현재의 외부감사 대상의 코스닥등록법인의 95%가 적정의견을 받았으며, 이는 외부감사대상회사 및 상장회사와 비교시 높은 비율이다. 특히 계속 외부감사를 받아온 코스닥등록법인의 경우 적정 및 한정의 비율이 100%를 차지하고 있어 회계의 투명성 제고에 외부감사제도가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표 III-3〉 등록법인의 1999년도 감사의견 현황

(단위 : 사, %)

구 분	계속감사		초도감사		합 계	
	회사수	비율	회사수	비율	회사수	비율
적정의견	244	96.8	20	76.9	264	95.0
한정의견	8	3.2	3	11.5	11	4.0
부적정의견	-	-	2	7.8	2	0.7
의견거절	-	-	1	3.8	1	0.3
계	252	100.0	26	100.0	278	100.0

1.4 繼續監査 여부에 따른 監査意見 推移

<표 III-4>에 의하면 계속감사회사의 적정의견비율은 1997년부터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초도감사시 적정의견비율은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고, 초도감사에 비해 계속감사의 적정의견비율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바, 이는 외부감사를 통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가 기업회계기준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써 외부감사인의 회계처리 지도기능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계속감사시에도 전년도에 비하여 감사의견이 악화된 비율이 1998년의 3.3%에서 1999년에는 3.7%로 증가하여 회사의 회계분식 시도의 증가와 이에 대하여 외부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고자 하는 추세를 볼 수 있다.

<표 III- 4> 연도별 감사의견의 변경현황

(단위 : 사)

구 분	1997		1998		1999	
	외부감사 대상회사	상장회사 ('97. 12월 결산)	외부감사 대상회사	상장회사 ('98. 12월 결산)	외부감사 대상회사	상장회사 ('99. 12월 결산)
-감사의견이 개선된 회사	(258)	(5)	(268)	(14)	(235)	(9)
o 한정에서 적정	244	4	250	13	209	8
o 부적정에서 적정	3	-	4	-	1	-
o 의견거절에서 적정	4	-	3	-	9	-
o 부적정에서 한정	1	-	2	1	2	-
o 의견거절에서 한정	5	1	8	-	9	1
o 의견거절에서 부적정	1	-	1	-	5	-
-감사의견이 악화된 회사	(337)	(25)	(233)	(18)	(243)	(15)
o 적정에서 한정	268	22	165	14	167	8
o 적정에서 부적정	8	-	4	-	11	-
o 적정에서 의견거절	33	3	32	3	48	5
o 한정에서 부적정	12	-	5	-	4	-
o 한정에서 의견거절	15	-	26	1	11	2
o 부적정에서 의견거절	1	-	1	-	2	-
-감사의견이 변경되지 아니한 회사	(5,372)	(492)	(5,568)	(455)	(4,763)	(453)
o 적정에서 적정	4,966	487	5,231	448	4,508	445
o 한정에서 한정	398	5	313	6	227	7
o 부적정에서 부적정	3	-	8	-	7	-
o 의견거절에서 의견거절	5	-	16	1	21	1

-초도감사	(1,227)	(6)	(932)	(16)	(1,300)	(35)
○ 적정	941	6	710	15	1,021	26
○ 한정	239	-	172	1	194	5
○ 부적정	12	-	8	-	17	1
○ 의견거절	35	-	42	-	68	3
합 계	7,194	528	7,001	503	6,541	512
-적정의견비율						
○ 계속감사회사	87.4%	94.1%	90.4%	94.7%	90.2%	95.0%
○ 초도감사회사	76.7%	100.0%	76.2%	93.8%	78.5%	74.3%

1.5 監査人 指定여부에 따른 監査意見 推移

<표 III-5>에 의하면, 1997년 및 1998년에는 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해 감사인을 지정 받은 회사의 적정의견비율이 자유선임에 의한 회사의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1999년에는 자유선임에 의한 회사의 적정의견비율이 오히려 낮게 나타났으며, 이는 과거와는 다른 추세로서 다음의 2가지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다. 첫째, 감사의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제고됨에 따라 적정의견을 받기 위하여 기업회계기준을 준수하려는 기업이 크게 증가했고 둘째, 지정대상법인은 그 요건상 부실우려가 높은 반면 감사인의 책임은 점차 강화되는 추세인 바, 외부감사인이 회계감사시 기업회계기준을 보다 엄격히 적용하고자 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표 III-5> 감사인 지정회사와 자유수임회사의 감사의견 비교

(단위 : 사, ()는 %)

구 분	1997			1998			1999		
	지 정	자 유	계	지 정	자 유	계	지 정	자 유	계
적정의견	287 (93.2)	5,975 (85.8)	6,186 (86.0)	275 (92.0)	5,923 (88.4)	6,198 (88.5)	173 (83.6)	5,575 (88.0)	5,748 (87.9)
한정의견	20 (6.5)	861 (12.4)	881 (12.3)	21 (7.0)	639 (9.5)	660 (9.4)	21 (10.1)	578 (9.1)	599 (9.1)
부적정의견	- (-)	37 (0.5)	38 (0.5)	- (-)	26 (0.4)	26 (0.4)	2 (1.0)	42 (0.7)	44 (0.7)
의견거절	1 (0.3)	88 (1.3)	89 (1.2)	3 (1.0)	114 (1.7)	117 (1.7)	11 (5.3)	139 (2.2)	150 (2.3)
계	308 (100.0)	6,961 (100.0)	7,194 (100.0)	299 (100.0)	6,702 (100.0)	7,001 (100.0)	207 (100.0)	6,334 (100.0)	6,541 (100.0)

〈표 III-6〉 감사인지정회사의 감사의견 변경현황

(단위 : 사, ()는 %)

구 분	감사인 지정회사의 감사의견		
	1997	1998	1999
- 감사의견 개선	8 (3.4)	16 (5.4)	12 (5.8)
- 감사의견 악화	13 (5.6)	9 (3.0)	7 (3.4)
- 감사의견 무변경			
o 적정의견	204 (87.6)	259 (86.6)	162 (78.3)
o 한정의견	7 (3.0)	15 (5.0)	16 (7.7)
o 부적정의견	- (-)	- (-)	2 (1.0)
o 의견거절	1 (0.4)	- (-)	8 (3.8)
계	233 (100.0)	299 (100.0)	207 (100.0)

〈표 III-6〉에 의하면 감사인 지정을 받은 계속감사회사 중 적정의견을 유지하는 회사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限定意見 表明事由

〈표 III-7〉에 의하면, 전체 외부감사대상회사 중 한정의견을 받은 회사의 비율은 1999년에 9.1%로 외부감사법 시행 첫 해인 1982년 54.3%, 1983년 45.9%에 비하여 대폭 개선되었다. 최근 5년간 한정의견의 표명사유는 기업회계기준의 위배가 대중을 이루고 있으나, 점차적으로 감사범위제한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1999년의 경우 감사범위제한 건수 비율이 25.0%로 1998년(19.8%)에 비해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

〈표 III-7〉 연도별 한정의견의 사유현황

(단위 : 건, 사)

구 분	1995	1996	1997	1998	1999
기업회계기준 위배	773(20)	809(10)	753(22)	550(11)	456(12)
감사범위 제한	93(1)	115(3)	140(9)	136(12)	152(10)
지적건수	866(21)	924(13)	893(31)	686(23)	608(22)
한정 회사수	866(21)	899(13)	881(31)	660(22)	599(21)

주 : 동일유형내 중복된 지적사항은 하나의 유형으로 봄.

()는 12월 결산 상장회사임.

〈표 III-8〉 기업회계기준 위배사항이 당기순이익에 미친 영향

(단위 : 사)

구 분	1997	1998	1999
당기순이익 과대계상	638(20)	459(11)	297(8)
당기순이익 과소계상	73 (1)	72(-)	102(1)
당기순이익 무영향	42 (1)	19 (-)	57(3)
계	753(22)	550(11)	456(12)
당기순이익 과대계상회사 비율(%)	84.7(90.9)	83.5(100)	65.1(66.7)

주 : ()는 12월 결산 상장회사임.

<표 III-8>에 의하면, 최근 3년간 기업회계기준 위배로 인한 한정사항의 대부분은 기업이 경영성과를 양호하게 표시하기 위하여 당기순이익을 과대 계상하여 공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기순이익 과대 계상회사의 비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바, 이는 회사의 기업회계기준 위배유형이 점차 다양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9〉 기업회계기준 위배사항별 분포

(단위 : 사)

구 분	연 도		
	1997	1998	1999
감가상각비 과소, 과대 계상	338	261	172
퇴직급여 과소, 과대계상	102	65	41
대손상각비 과소, 과대계상	118	64	89
재고자산 평가손실 과소, 과대계상	19	11	15
유가증권 평가손익 과소, 과대계상	-	-	7
투자유가증권평가손익 과소, 과대계상	49	24	22
이연자산 상각비 과소, 과대계상	11	10	-
세법상 준비금의 계상	25	26	11
매출·매출원가 과소, 과대계상	13	13	12
기타의 위배사항	59	70	82
계정 재분류	19	6	5
회 사 수	753	550	456

주 : 기업회계기준 위배로 인한 한정사유 중 가장 중요한 사항을 기준으로 하였음.

<표 III-9>에 의하면, 기업회계기준 위배사항을 유형별로 보면 ① 유형자산 감

가상각비(=감가상각누계액) 과소 또는 과대계상, ② 퇴직급여의 과소 또는 과대계상, ③ 부실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 또는 대손충당금의 과소 또는 과대계상, ④ 재고자산평가손실의 과소 또는 과대계상, ⑤ 투자유가증권평가손실의 과소 또는 과대계상, ⑥ 매출 및 매출원가의 과소 또는 과대계상 등이 있다. 1998년에 비하여 1999년에는 대손상각비, 재고자산평가 및 투자유가증권에 대한 기업회계기준 위배사항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기업의 주요 부실요인에 대하여 감사인이 기업회계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고자 하는 반면에 기업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으려는 입장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3. 不適正意見 表明事由

피감사회사의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에 위배된 경우 감사인은 한정의견 또는 부적정의견을 표명하게 되는데 그 위배사항이 재무제표에 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적정의견을 표명한다. <표 III-10>에 의하면 1999년에 부적정의견을 받은 회사의 기업회계기준 위배사항을 유형별로 보면 계속기업가정이 타당하지 않을 경우가 대부분으로서 부적정의견사유의 54.5%를 차지하고 있다.

<표 III-10> 연도별 부적정의견 사유현황

(단위 : 사, ()는 %)

구 분	1995	1996	1997	1998	1999
-감가상각비 과소계상	5 (50.0)	6 (46.2)	20 (52.6)	15 (57.7)	5 (11.4)
-대손상각비 과소계상	- (-)	2 (15.4)	11 (29.0)	4 (15.4)	7 (15.9)
-재고자산 과대계상	1 (10.0)	- (-)	1 (2.6)	1 (3.8)	1 (2.3)
-계속기업 의문시	- (-)	- (-)	- (-)	- (-)	24 (54.5)
-기 타	4 (40.0)	5 (38.4)	6 (15.8)	6 (23.1)	7 (15.9)
계	10(100.0)	13(100.0)	38(100.0)	26(100.0)	44(100.0)

주 : 부적정의견 사유가 복합적인 경우에는 사유하나를 기준으로 분류하였음.

4. 意見拒絕 表明事由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감사범위의 제한 및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가능성 희박한

경우 등의 사유로 피감사회사의 재무제표 전반에 대한 의견표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의견거절이 표명된다. <표 III-11>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의견거절을 받은 회사의 비율은 매년 점차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는데, 이는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회사의 사정이 악화되고 이와 함께 기업경영의 투명성 및 감사인의 책임 문제가 강화됨에 따라 의견거절 사유에 대해 감사인 스스로가 엄격히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견거절사유 중 76건(50.7%)이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가능성이 희박한 경우로서 '98년 이전에는 동 사유로 인한 의견거절은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았던 바, 경제적 불확실성의 증가와 이에 따른 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인하여 감사인이 계속기업에 대한 감사를 보다 엄격히 하였기 때문이다.

<표 III-11> 연도별 의견거절 사유현황

(단위 : 사)

구 분	1995	1996	1997	1998	1999
- 감사범위의 제한					
· 회계기록의 미비 및 증빙서류의 미제시	20	41	51	72	51
·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4	2	1	3	1
· 재고자산 실사 미확인	13	17	24	23	9
· 해외지사 자산·부채 미확인	-	-	2	1	1
· 어음·수표와 관련 자금거래	7	3	6	6	-
· 기타 감사범위 제한	2	8	4	12	11
-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	-	1	-	1
-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가능성 희박	-	-	-	-	76
계	46	71	89	117	150

주 : 의견거절사유가 복합적인 경우에는 주된 사유 하나를 기준으로 분류하였음.

5. 特記事項 分析

5.1 特記事項의 分類

특기사항이란 감사인의 감사의견에는 영향이 없으나 감사보고서 이용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이다. <표 III-12>에 의하면 최근 3년간 감사보고서상의 특기사항 기재건수는 매년 증가추세이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용은 1997년, 1998년, 1999년도에 각각 전체특기사항의 30.0%, 28.6%, 26.6%로 지속적으로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바, 이는 기업의 내부거래

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높고 감사인들이 내부거래의 적정공시를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1997년말부터 시작된 외환위기 등으로 인한 경제상황의 불확실성 및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이 의문시되는 경우가 1997년, 1998년, 1999년도에 각각 전체특기사항의 36.2%, 29.8%, 28.0%에 달하고 있다. 1999년도에는 1998.12.11 개정된 기업회계기준의 적용으로 인하여 중요한 회계처리 및 추정의 변경내용 및 영향에 대한 특기사항이 전체특기사항의 22.2%에 달하고 있고, 또한, 1998년에 이어 기업구조조정과 관련된 기업개선작업에 대한 내용이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Ⅲ-12〉 특기사항의 내용별 분류

(단위 : 건)

구 분	1997	1998	1999
① 합리적 추정이 불가능한 중요한 불확실한 사항	375	248	111
②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이 특히 의문시되는 경우 그 내용	2,495* (36.2%)	3,001* (29.8%)	2,946* (28.0%)
③ 합병, 영업부문의 양수도를 포함한 영업환경의 중요한 변화	171	366	433
④ 주주, 임원 및 관계회사와의 특히 중요한 거래내용	2,069 (30.0%)	2,879 (28.6%)	2,800 (26.6%)
⑤ 대차대조표일 후에 발생한 중요한 거래내용	346	383	349
⑥ 중요한 회계처리 및 추정의 변경내용 및 영향	782 (11.4%)	595 (5.9%)	2,332 (22.2%)
⑦ 산업합리화 계획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예외인정 내용	37	9	10
⑧ 기업개선작업(work-out plan) 관련 내용	-	84	160
⑨ 2000년(Y2K)표기문제 관련 내용	-	499	-
⑩ 자산재평가실시 관련 내용	-	769	232
⑪ 계약이전(P&A)에 의한 자산·부채인수 관련 내용	-	10	5
⑫ 증자·감자 관련 내용	-	185	170
⑬ 기업회계기준 조기적용 관련 내용	-	105	-
⑭ 기타	612	933	975
계	6,887	10,066	10,523

* IMF로 인한 불확실성(97년 : 2,255건, 98년 : 2,491건, 99년 : 2,578건) 포함.

5.2 會計處理方法 變更內容의 分類

〈표 Ⅲ-13〉에 의하면, 1999년도 감사보고서 본문의 별도문단에 회계변경사실을 기술한 회사는 모두 1,614사로 1998년의 443사에 비해 급속하게 증가하였는데, 이

는 1998년 12월에 기업회계기준의 전면 개정(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으로 인해 많은 기업이 1999년도에 개정기준에 따라 회계변경을 하였기 때문이다.

<표 III-13> 회계처리방법의 변경이 당기순이익에 미친 영향

(단위 : 건, 사)

구 분	이익이 증가된 회사			이익이 감소된 회사			이익에 영향이 없는 회사		
	1997	1998	1999	1997	1998	1999	1997	1998	1999
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									
선입선출법→총평균법	-	4(1)	4(-)	2(-)	2(1)	6(1)	-	-	-
선입선출법→이동평균법	-	-	-	1(-)	1(-)	-	-	-	-
이동평균법→총평균법	-	1(-)	1(-)	-	2(-)	-	-	1(-)	-
기타	8(2)	2(-)	2(1)	2(-)	2(-)	2(1)	-	-	1(-)
감가상각법 변경									
정률법→정액법	125(29)	77(15)	588(76)	-	1(1)	141(12)	-	-	86(13)
정액법→정률법	-	2(-)	1(-)	1(-)	6(-)	8(-)	-	-	-
기타	48(22)	2(-)	2(1)	3(-)	2(-)	4(1)	-	-	4(-)
특별감가상각비									
미계상→계상	-	-	-	2(-)	2(1)	-	-	-	-
계 상→미계상	1(-)	-	-	-	-	-	-	-	-
이연자산상각방법 변경									
균등상각→일시상각	-	-	-	8(2)	-	-	-	-	-
일시상각→균등상각	7(4)	1(1)	-	-	-	-	-	-	-
기타	11(3)	-	-	2(-)	-	-	-	-	-
수익인식기준변경									
완성기준→진행기준	9(-)	6(-)	14(2)	-	-	2(-)	-	-	-
진행기준→완성기준	-	-	-	3(1)	-	-	-	-	-
기타	1(-)	1(-)	2(-)	1(-)	3(1)	1(-)	-	2(1)	-
외화자산·부채평가방법 변경	318(59)	14(2)	37(8)	103(29)	36(7)	33(7)	2(-)	-	33(2)
금융비용자본화	39(9)	2(2)	-	-	-	-	-	-	-
대손충당금설정기준 변경	-	2(-)	8(-)	-	169(12)	16(-)	-	-	9(-)
유가증권평가기준 변경	-	41(3)	31(8)	-	30(9)	14(4)	-	3(1)	4(1)

이연법인세	-	-	123(42)	-	-	95(26)	-	-	32(6)
지분법	-	-	86(32)	-	-	58(16)	-	-	22(5)
퇴직금처리기준 변경	-	-	1(-)	-	12(10)	3(1)	-	1(1)	3(-)
기타회계처리방법변경	39(13)	86(5)	309(66)	32(10)	47(8)	205(52)	14(4)	32(7)	88(11)
회계추정의 변경									
유형자산 내용연수변경	-	-	300(58)	-	-	178(18)	-	-	4(1)
무형자산 내용연수변경	-	-	12(3)	-	-	3(-)	-	-	-
대손율의 변경	-	-	-	-	-	1(1)	-	-	-
기타	-	-	2(1)	-	-	3(1)	-	-	-
회계변경 건수	606(141)	241(29)	1,523(298)	160(42)	315(50)	773(141)	16(4)	39(9)	286(38)
회계변경회사수	521(103)	210(24)	1,129(207)	144(40)	220(26)	290(48)	13(4)	13(4)	195(24)

주.: ()는 12월 결산 상장회사임.

대표적인 회계처리방법의 변경을 유형별로 보면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이연법인세, 지분법, 대손충당금 설정기준의 변경 등이 있다. 회계처리방법의 변경은 회계기준등의 변경으로 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 1998년도에 개정 시행된 은행감독업무시행세칙 및 신탁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라 대손충당금 설정기준, 유가증권평가기준, 퇴직금처리기준을 변경한 회사는 1998년도에 각각 171사, 74사, 13사이었으며, 1999년도에 개정 기업회계기준 등에 따라 이연법인세, 지분법, 회계추정을 변경한 회사는 각각 252사, 166사, 503사에 달한다. 비록 기업회계기준에서 회계기준의 변경으로 인한 회계처리방법의 변경을 정당한 회계처리방법의 변경으로 용인하고 있으나 이러한 변경이 회계처리방법의 계속성에 위배되며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회계정보이용자의 혼란을 야기한다는 측면에서 비판받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이 1996년에 이어 1998년에도 전면 개정됨에 따라 재무제표 전반에 대한 연속성이 단절되어 연도별 비교가능성이 저해되고 있다.

IV. 監査意見 限界點과 證券市場에 미치는 影響

1. 監査意見의 限界點

감사인이 감사를 수행하고 표명하는 감사의견의 유형이 피감사회사의 경영성과

나 재무건전성을 구분하게 되는 지표는 아니다. 감사의견의 유형 중 적정의견은 회사와는 독립적인 감사인이 감사범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감사한 결과 수집된 합리적인 증거를 기초로 중요성의 관점에서 판단할 때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회계처리방법과 재무제표 표시방법이 기업회계기준에 일치하여 재무제표에 중요한 오류나 왜곡표시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표명되는 감사의견이다.

한정의견은 감사범위의 제한이나 회사가 채택한 회계정책과 적용방법 또는 재무제표 공시의 적정성 등에 대한 감사인과 경영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중요하여 적정의견을 표명할 수는 없지만 부적정의견이나 의견거절을 표명하여야 할 정도로는 중요하지 않거나 전반적이지 않아서 이러한 예외사항의 영향을 제외하고는 재무제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표명된다. 한정내용과 관련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또는 조건으로는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이 계속 적용되어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다. 충분한 감사증거가 결여되어 있거나 감사인이 감사범위에 제한을 받아서 적정의견을 표명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또는 실시한 감사를 근거로 감사인이 다음과 같이 믿게 되었으나 부적정의견이나 무의견은 표명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을 때 한정의견을 표명한다. ①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준거되어 있지 않으며 그 사실이 미치는 영향이 중대할 때, ② 회계원칙 또는 적용방법이 회계기간 사이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때, ③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불확실성이 있을 때, 여기서 제외와 조건의 사용에 관하여 구별에 문제점이 있다는 견해¹⁵⁾가 있으나 현재로서는 전자는 제시된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한 회계원칙에 따르지 않을 경우를, 후자는 감사인이 해결불가능했던 불확실한 사항이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 때 사용되고 있다.

부적정의견은 감사범위의 제한없이 감사한 결과 감사인과 경영자간의 의견불일치로 인한 영향이 대단히 중요하고 전반적이어서 한정의견의 표명으로는 재무제표의 오도 또는 왜곡표시된 내용을 적절히 공시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표명된다.

의견거절은 감사인의 독립성이 결여되어 있거나 감사범위의 제한의 영향이 매우 중요하고 전반적이어서 감사인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획득할 수 없었고 따라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표명이 불가능한 경우와 계속기업으로서 존속가능성이 의문시되는 경우에 표명되는 감사의견이다.

이처럼 감사인이 표명하는 4가지 감사의견은 어디에 기초를 두고 이루어지는가

15) D. R. Carmichael, "The Auditor's Reporting Obligation," (AICPA, 1972), pp. 142~143.

를 살펴보기로 한다. 감사의견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내용은 “GAPP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되고 있는가의 문제이다. GAPP에 관해서는 APB Statement No. 4에서 “특정시점에 있어서 인정된 회계실무를 정의하기 위해 필요한 실무규칙과 절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재무회계 전체에 관련되며 타 원칙의 기초로서 포괄적 원칙, 재무회계의 기록·측정·커뮤니케이션 과정에 적용될 광범위한 운영원칙 및 상기의 두 원칙을 실제에 적용하는 세분화된 원칙으로 대별하여 보고하고 있다. AICPA의 SAS No. 5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을 규정하기 위한 공준·규칙·절차를 포함하는 회계의 기술적 용어로서 이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광범위함 뿐만 아니라 상세한 절차와 관습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은 상대적으로 객관적이거나, 특정한 상황에서는 감사인의 판단이 수반되므로 AICPA의 의견 및 보고를 준용해야 한다¹⁶⁾고 규정하고 있다. 적정표시에 관해서는 SAS No. 5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초가 된다고 제시하고 있다. ① 적용된 회계원칙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지의 여부, ② 회계원칙의 상황에의 적합성, ③ 재무제표의 이용 및 해석에 영향을 주는 사항의 공표 여부, ④ 재무제표에 공표된 정보가 합리적으로 분류 요약되었는지 여부, ⑤ 회계사상을 재무제표에 표시하는데 있어서의 제약의 합리성 및 실행성 등을 들고 있으며 우리 나라의 경우 감사보고준칙에서 감사범위에 제한이 없으며,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전년도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을 경우를 들고 있다. 따라서 재무제표의 적정표시란 회계원칙에 따라 계속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표시방법이 적정하고 이용자를 오도하지 않도록 제시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적정의견을 받은 회사의 경우 당해 회사의 재무건전성이 양호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논리로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을 받은 회사의 경우에도 그 회사의 경영성과 또는 재무상태가 불량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단지 감사의견은 회사의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 등에 따라 작성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감사인의 의견표명일 뿐이다.

외환위기 이후 회계투명성 재고를 위하여 국제적 수준으로 개선된 회계기준과 감사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되었기 때문에 재무지표 및 감사의견은 다소 악화되었으나, 이는 회계정보 투명성제고·육석가리기의 진전으로 볼 수 있어 시장참여자로부터 신뢰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었고, 엄정한 회계감사를 수용하여 적자를 실현하고 적정의견을 받은 회사, 개정 감사기준의 엄격한 적용으로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가

16) AICPA, SAS No. 5, “The Meaning of Present Fairly in Conformity with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in the Independent Auditors Report,” (AICPA, 1975), pars. 2~5.

능성 때문에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을 받은 회사와 같이 정상기업과 한계기업이 차별화되고, 이에 따라 시장기능에 의한 상시 구조조정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며, 재무제표의 신뢰성 제고로 회사의 미래현금창출능력을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게 됨으로써 여신을 위한 신용평가지 재무제표의 역할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V. 結 論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외부감사대상회사(1999년 1월~12월 결산법인)로서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된 6,541개의 개별감사보고서를 대상으로 감사의견의 추이요인 및 특기사항 등을 분석결과 1997년 말부터 시작된 경제위기로 인한 기업의 부도 및 구조조정 등으로 인하여 회계정보의 신뢰성 및 투명성 제고가 국가적인 중요 과제로 등장함에 따라 감사보고서의 내용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이는 기업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1997년 이후 계속해서 감사보고서 제출 회사수가 감소했고, 감사보고서 특기사항에는 1998년에 이어 전반적인 경제위기에 따른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가능성에 대한 내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바, 우리나라 기업들이 직면한 미래의 불확실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또한, 회계처리변경 등에 대한 특기사항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1998년 12월 11일 개정된 기업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것이다. 1999년도에는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의문으로 인한 한정이하의 감사의견(한정, 부적정 및 의견거절)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는 1997년 이후 경기침체에 따른 한계기업의 부도로 인하여 계속기업에 대한 감사가 강화된 결과이다. 현재 금융감독위원회에서는 1999년부터 1단계로 서면 공시제도와 병행하여 상장법인 등의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 포함) 등에 대한 전자공시제도를 실시하였으며, 2000년부터는 비상장법인에 대해서도 확대 실시하고 있다. 2001년부터는 외부감사대상회사의 감사보고서를 포함한 공시서류의 전자공시의무화됨에 따라 외부이용자의 회계정보에의 접근이 보다 용이해질 것이다. 이 제도가 정착되면 감사의견 등에 대한 더욱 심도 있고 광범위한 분석이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회계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좋은 방안들이 마련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참 고 문 헌

1. 금융감독원 공시감독국, 회계자료실(<http://fsc.go.kr>), 2000.
2. 금융감독원, 상장법인 등의 회계처리규정
3. 이강훈, 한정감사의견의 유용성관한 연구, 석사, 1995.
4. 이정호, 재무회계론 제2판, 경문사, 1999.
5. 이효익, 현대회계감사론, 무역경영사, 2001
6. 남상오, 회계이론, 다산출판사, 1997.
7. 송자의 2, 회계감사, 법문사, 1991.
8. 청기숙, 회계정보 이용자와 감사의견에 관한 연구, 회계학회, 1979.
9. 한국공인회계사회, 의견서 및 사례총집(1), 1999.
10.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감사 준칙, 2000.
11. 안권회계법인, 감사보고사례집, 1999.
12. Mautz, R. K., Hussein A. Sharaf, The Philosophy of Auditing, A.A.A, 1994.
13. Eric L. Kohler, A Dectionary for Accountants, Prentice-Hall, Inc, Englewood Cliffs, N.J. 1975.
14. James T. Johnson, J. Herman Brasseaux, Readings in Auditing, south-Western Publishing Co. 2nd edition, 1995.
15. Walter B. Meigs, E. John Larson, Robert F. Meigs, Principles of Auditing, 5th edition, Richard D. Irwin, Inc., 1973.
16. FASB Discussion Memorandum, An Analysis of Issues related to Criteria for Determining Materiality, 1972.
17. AICPA, Objectives of Financial Statements, 1973.
18. AICPA, APB Statement No.4, 2001.
19. Eldon S. Hendriksen, Accounting Theory, revised edition, Richard D. Irwin, Inc., 1970.
20. AICPA, SAS No. 2, 5.
21. The Institute of Chartered Accountants in Australia, The Concept of Materiality, 1972.
22. James W. Pattillo, The Concept of Materiality in Financial Reporting,

- Financial Executives Research Foundation, 1976.
23. Shane Moriarity, F. Hutton Barron, "Modeling the Materiality Judgments of Audit Partners,"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Autumn, 1976.
 24. Sam M. Woolsey, "Approach to Solving the Materiality Construct in Auditing," *Journal of Accountancy*, March 1973.
 25. Bart H. Ward, "An Investigation of the Materiality Construct in Auditing,"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Spring 1976.
 26. Melvin C. O'Connor, Daniel W. Collins, "Toward Eatablising User-Oriented Materiality Standards," *The Journal of Accountancy*, December 1974.
 27. Donard Rappaport, "Materiality," *The Journal of Accountancy*, April 1964.

Abstract

A Study on Transition Factor of Audit Opinion

Chung, Youn-hae

The causes that the transparency of Korean accounting information was rated low, a short supply of faithful and transparent accounting information from the limitation of external audit environment must be pointed out. Purpose of the external audit is a expression of the auditors about that financial statements an enterprise made public were appropriately drew up in accordance with the corporate accounting principles from important point of view. Analysis of the audit opinion and so fourth according to 6,541 individual audit reports and introduced to the bill securities forward committee as a subject of external audit according to the raw of corporation external audit show that considerable change to the contents of audit report . This show as it is that uncertainty of future that is now being faced by our enterprise, because corporation which present audit reports since 1997 because of enterprise dishonor and contents of existence probability as a continued enterprise following to general economic crisis after 1998 occupy important position in special matters of audit report. Also, increase in special matters is due to application of the corporate accounting principles revised on December 11, 1998. In 1999, audit opinion under limitation(limitation, incongruity and rejecting opinion) increased greatly according to existence doubt as a continued enterprise, and this is the consequence of strengthening audit to the continues enterprise because of limited enterprise dishonor according to the stagnancy of business activities after 1997. Now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put in effect electromagnetic public announcement system about a project report of listed corporation (including an audit report) keeping pace with a documentary public announcement system as first phase since 1999 and expand to the unlisted corporation from 2000. As

electromagnetic public announcement of public announcement documents including audit documents of external audit subject get a duty, approach of external user to the accounting information will be easier. Fixation of this system will make deep and wide analysis to the audit opinion, and this will draw up a plan to reconsider confidence of accounting information.